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 - 623호

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·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5호(2006. 3. 23.)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71-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.
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(동작구청 주택과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6월 15일

동 작 구 청 장

- 공람기간 : 공고 게재일부터 30일간
- 공람장소 : 동작구청 주택과 (☎820-9782)
- 공람내용

1.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
 - 가. 정비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구 역 명	위 치	면적 (ha)	정비예정구역 지정 (고시번호)
해제	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	동작구 사당동 71-6 일대	1.0	2006. 3. 23. (서고시 제2006-95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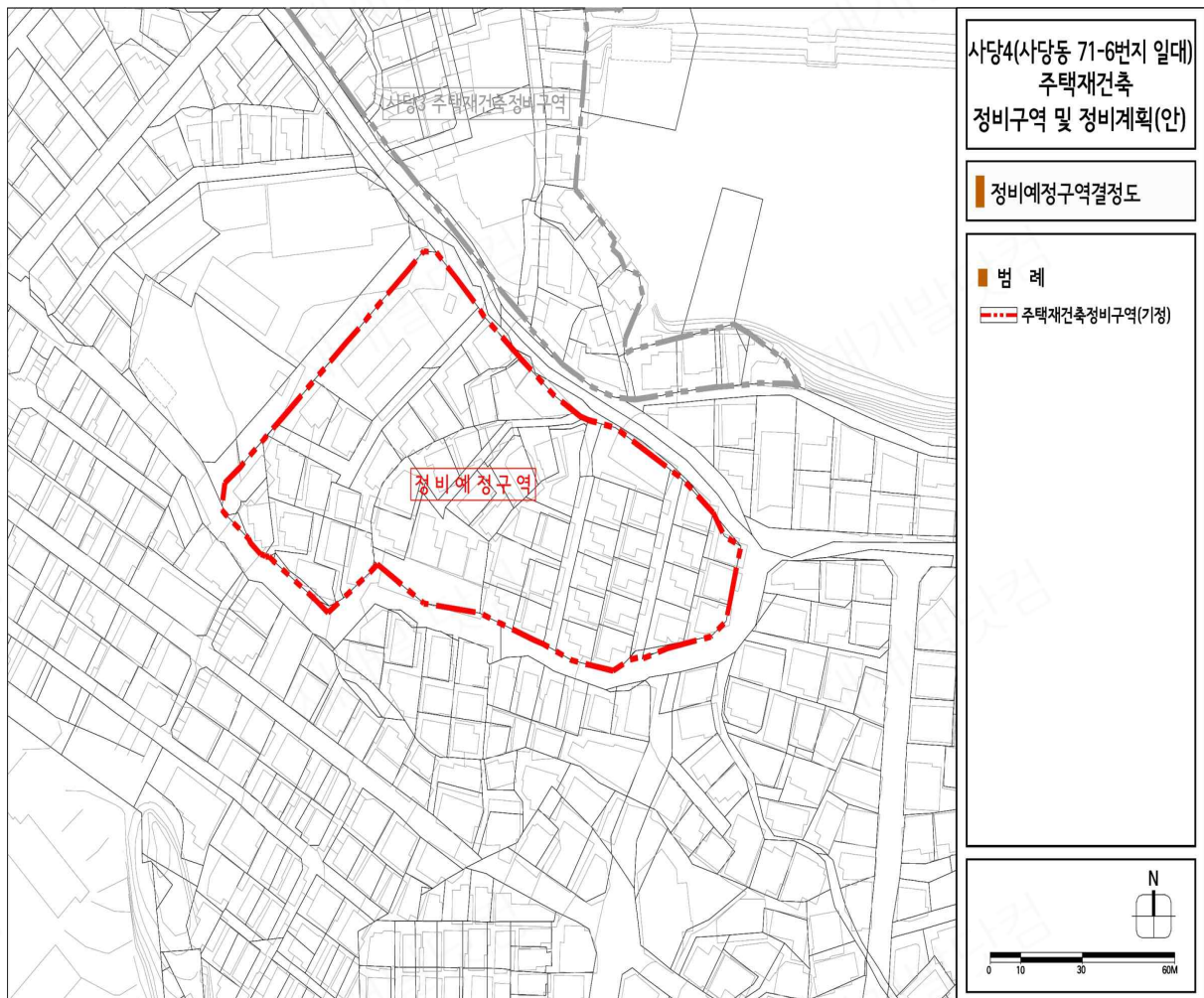
- 나. 기본계획 (해 제)

구분	구역 번호	동명	지번	면적	계획 용적률	건폐율	층수	추진 단계	주택 유형	비고(조건 등)
기정	4	사당동	71-6	1.0ha	190%	60%	7층 이하	2	단독	
변경	해 제									

다.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서

구 역 명	변 경(해 제) 사 유	비 고
사당동 71-6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	대상지역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개발의지 미미하고 기반시설이 대체로 양호하여 개별건축이 가능하고, 그 동안 정비예 정구역 지정에 따른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 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의 3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하고자 함	

라.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도



인사발령

[발령 제106호]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최선경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17년6월12일부터 2018년6월11일까지)	사당제5동	지방사회복지사기보

2017. 6. 12.字

[발령 제108호]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유정연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	교육문화과	지방행정서기보시보 (시간선택제)

2017. 6. 14.字

동
작
구
보

제
1
4
9
4
호

동
작
구



www.dongjak.go.kr

 **동 직 구**